

경영위원회 운영규정(전문)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규정 제 12 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경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권한)

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결의사항을 제외하고 이사회에서 위임한 회사의 제반 업무집행에 대하여 심의, 결정할 수 있다.

제 3 조(구성)

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2인 이상의 이사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로 구성한다.

제 4 조(의장)

-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대표이사가 수인이거나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5 조(관계인의 출석 등)

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안을 설명토록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6 조(소집)

-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- 위원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일 12시간 전까지 위원장이 서면 또는 구두로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7 조(결의방법)

- 위원은 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.
-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며,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

송, 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경영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- ③ 위원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케 할 수 없다.
- ④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, 그 위원의 의결권은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⑤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집행하고 위원회의 주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8 조(이사회와의 관계)

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 9 조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업무를 제외한 이사회에서 위임한 회사의 제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. (첨부 참조)

제 10 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간사가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1 조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따로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.

제 12 조(규정의 개폐)

-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위원회의 결의로 한다.

첨 부 : 경영위원회 부의안건

<부 칙>

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